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0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기도원 교회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28.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면 [redacted]리 293 지상 건물을 기도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면 [redacted]리 289 토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2016. 6. 1.) 현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323,400원, 지방교육세 64,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 또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기도원 건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306, 같은 리 289-3(이하 순서대로 '306 토지', '289-3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306 토지, 289-3 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자 2015. 9. 15.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각 토지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피고의 출장조사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면적	공부상 등재현황	사실상의 현황
306 토지	728㎡	종교용지	종교용지(주차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289-3 토지	580㎡	대지	종교용지(주차장)
이 사건 토지	660㎡	대지	잡종지

③ 피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 306 토지와 289-3 토지가 기도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자 위 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감액·경정하지 않았다.

④ 을 제4호증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자체가 용이해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현황을 잡종지로 보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도원의 녹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녹지로 조성되었다거나 지하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녹지로 사용되거나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신혜원

판사 이창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4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